

남북 위탁가공교역의 현황 및 과제

趙泳照 · 남북협력기금부 책임심사역

I. 머리말

II. 북한의 시각과 남북 거래현황

III. 위탁가공교역 실태

IV. 전망과 과제

I. 머리말

국민의 정부는 지난 4년간 헛별정책을 통하여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남북교역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을 이루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남북 경제력 격차 해소를 통한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위탁가공을 포함한 남북교역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1998년에는 IMF 경제위기로 위축되었다가 1999년과 2000년에는 국내 경기 회복 및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다시 증가하였으나, 2001년에는 남북간

선박 운항 일시 중단, 남북관계 소강 및 북·미 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남북교역 분야 중에서 위탁가공교역은 남북한 생산요소의 상호보완성을 적극 활용한 대표적 사례로서, 남북 모두에게 활용가치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남북교역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 상호 이익 증진이 가능한 위탁가공교역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¹⁾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200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²⁾(이하 ‘가공무역법’이라 한다)을 제정한 데 이어, 2002년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사설을 통하여 ‘사회주의 원칙을

1) 오승렬·조동호 박사는 남북경협 발전의 우선순위를 ‘위탁가공교역→투자→교역’에 두고, 우선은 위탁가공교역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함(오승렬·조동호, “남북경협의 평가와 새로운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주최, 남북경협의 새로운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에 관한 정책세미나, 2001. 10. 26, p.42.).

2) 북한은 이 법을 2000년 1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87호로 채택하여, 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승인하였음.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분야’를 사회주의 경제관리 완성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면서 외화획득이 가능한 분야인 위탁가공무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동안 진행된 위탁가공교역의 실태를 분석하면서 위탁가공교역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위탁가공교역이 북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지난 10여년간 위탁가공교역이 추진되어 온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에는 위탁가공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교역형 위탁가공교역³⁾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해봄으로써 그 실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위탁가공교역의 전망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북한의 시각과 남북 거래 현황

1. 위탁가공교역에 대한 북한의 시각

위탁가공교역⁴⁾이란 국제간 거래인 위탁가공무역을 남북한 거래에 대입한 개념으

로(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 참조), 加工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의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다음 그 가공제품을 남한에 재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교역을 말한다. 북한 역시 위탁가공무역에 대해 거의 동일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가공무역법’ 제3조는 위탁가공무역에 대하여 “외국기업으로부터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받아 그 요구대로 가공, 조립하여 주고 가공비를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은 가공임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흔히 ‘임가공교역’으로 불리운다.

국제적으로 위탁가공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위탁자는 ① 수탁자의 低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② 自國의 환경보호 규제를 회피하고, ③ 사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① 위탁자의 원자재·설비 및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② 위탁자의 유통채널을 통한 시장접근이 용이해 단기간 내에 선진국과의 교역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는 국가계획에 따라 생산·소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계획이 아닌 위·수탁자 당사자 간의 개별적 합의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위탁가공무역은 큰 의의를 가지

3) 위탁가공교역이 시작된 1991년 이후 2001년까지의 위탁가공교역 총반출액은 242,468천 달러이며, 이 가운데 위탁가공설비 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24,952천 달러)에 불과함(통일부, 통일백서, 2002, p.130.).

4) 남한은 남북간 거래에 대하여,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간 거래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역’이라는 일반 용어 대신 ‘교역’이라는 특수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북한은 남북간 거래와 외국간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지 못하게 되며, 단지 제한된 범위에서 생산조직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⁵⁾

이와 같이 제한적 기능밖에 하지 못하던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의 위탁가공교역의 위상이 북한에서는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외화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외채상환의 부담 없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외화획득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가공무역 방식이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된 것은 김일성이 1984년 2월 13일 무역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담화에서 비롯되었다.⁶⁾ 이 담화에서 직접무역 이외에 가공무역 등으로 무역방식을 다양화 할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위탁가공무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서방 자본주의와의 위탁가공무역은 1987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⁷⁾ 북한은 가공무역의 발전을 위하여 1992년 10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을 제정한⁸⁾ 데 이어, 김일성은 1993년 12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 및 1994년 신년사를 통하여 가공무역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⁹⁾ 또한 1996년 2월 14일 위탁가공무역과 관련한 북한 최초의 법규인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을 제정한 바 있으며,¹⁰⁾ 최근에는 가공무역 확대를 통하여 체제 안정은 물론 외화 획득, 대외경제교류 확대 발전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실리주의적 판단하에 가공무역법을 제정함으로써 위탁가공무역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¹¹⁾

이와 같이 북한이 위탁가공무역에 대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것은, 위탁가공무역을 통하여 공장자동화를 제고하고 외화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이 시기의 풍미이다.

5)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제2권, 1985, p.720.

6) 김일성은 이 담화에서 "무역방법도 고정된 한가지 방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양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방법으로만 할것이 아니라 가공무역도 하고 되거리무역도 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였음(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제38권, 1992, p.236.).

7) 김일성은 1987년 3월 20일 화학공업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연설에서, 구라파의 어느 한 나라가 북한과의 피복가공무역을 많이 할 것을 제의한 사실을 언급하였음(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제40권, 1994, p.287.).

8) 동법은 외국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를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제 13조), 동법은 가공무역을 전제로 제정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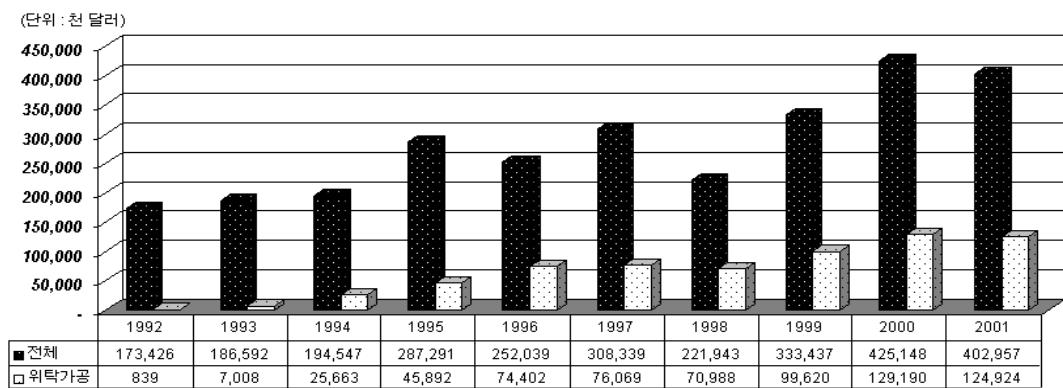
9) 김일성은 1993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무역방법을 개선하고 가공무역을 많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피복가공무역만 잘하여도 많은 외화를 벌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1994년 신년사에서는 "모든 부문, 모든 지방에서 수출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수출을 더욱 늘이며 가공무역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음(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제44권, 1996, pp.282~295.).

10) 동 규정 제2조에서는 위탁가공이라는 용어 대신에 '샵가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11) 가공무역법상 북한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내용으로는 위탁가공지역 확대(제4조), 가공무역 실시기관 확대(제5조), 가공무역으로 큰 수익 창출기업 우대(제38조) 등이 있음.

(그림 1)

위탁가공교역 현황 (금액 기준)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각호.

된다.¹²⁾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경제개발 초기에 위탁가공무역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듯이 북한도 위탁가공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난 타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2. 남북 거래현황

위탁가공교역은 1991년 코오롱상사(現 코오롱인터넷내셔널)가 학생용가방을 간접교역방식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¹³⁾ 교역규모 면에서 남북 위탁가공교역은 1994년 2,000만 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1996년 7,000만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2000년부터는 1억 달리를 돌파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의 위탁가공교역은 124,924천 달러로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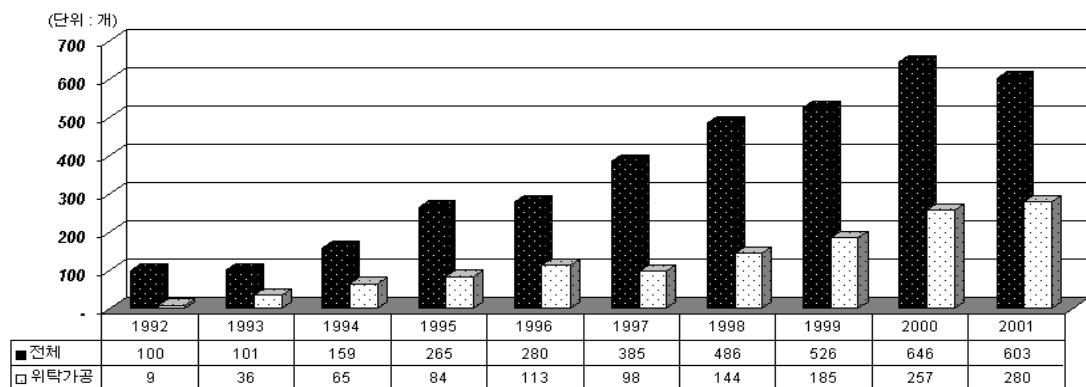
남북교역액 402,957천 달러의 3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북 지원물자 등의 비거래성 교역액을 제외한 거래성 교역액(236,313천 달러) 기준으로는 52.9%에 달하고 있어 위탁가공교역이 남북교역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품목 면에서 2001년 남북교역 전체품목 수는 603개로 전년도에 비해 43개가 감소하였으나, 위탁가공무역 품목 수는 전년도에 비해 23개가 증가한 280개 품목을 기록(남북교역 전체품목의 46.4%)함으로써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최대품목은 섬유류로서 위탁가공교역의 7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칼라TV, 컴퓨터모니터, 라디오 카셋트, 유선전화기, 방송통신기기, 당면, 조제과실, 잎담배 등으로 점차 다변화되는 추세에 있다.¹⁴⁾

- 12) 북한은 위탁가공무역에 대하여 수탁자의 생산기술·노동력·자연조건의 효과적 이용을 통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고 대외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앞, 경제사전 제2권, p.720), 가공무역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거래상품, 거래대상자, 외화획득, 가공능력, 총비용 등을 들고 있음(사회안전부출판사, 민사법사전, 1997, p.2.).
- 13) 남북 위탁가공교역은 1998년 IMF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감소, 2001년 북한의 인천-남포간 운항 선박 입항 및 선적 거부에 따른 감소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14) 앞, 통일백서, p.129.

〈그림 2〉

위탁가공교역 현황 (품목수 기준)



주: MTI 6단위 물품분류에 의한 것임.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각호.

이와 같이 위탁가공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남북 모두가 위탁가공교역의 유리한 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남한의 입장에서 위탁가공교역은 ① 과거 동남아, 중국 등과 위탁가공무역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고, 특히 북한은 언어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며, ② 민족내부간 거래에 따른 무관세 혜택 및 북한의 낮은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고, ③ 직접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고, 북한의 산업 실태·기술수준 파악·경영기법 전수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직접투자에 대비할 수 있으며, ④ 신시장 개척이라는 기업가 정신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북한의 입장에서 위탁가공교역은 ① 생산과

정을 북한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이른바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인 황색바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② 원자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위탁가공교역 활용을 통한 공장가동율을 제고할 수 있으며,¹⁵⁾ ③ 새로운 시장 개척의 부담이 없이 외화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에서 생산된 위탁가공품은 대부분 국내로 반입되어 내수 위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남한의 주요 수출국인 EU, 일본, 미국이 북한산 제품에 대하여 여러 통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와 일본은 북한산 제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¹⁶⁾ 한편,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일반특

15) 김일성은 “국제시장을 잘 연구하여야 가공무역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기간 많은 공장을 건설하여놓았지만 지금 원료와 자재가 부족하여 온을 다 내지 못하는 공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사다가 공장을 만부하로 돌려 생산된 제품을 국제시장에 내다 팔면 우리나라의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利用할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음(앞, 김일성 저작집 제38권, p.243.).

16) 그러나 EU와 일본의 관세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GSP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가격차이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함(홍순용, “북한산 위탁가공품의 수출경쟁력 비교”, 북한뉴스레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년 10월호, p.7.).

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과 및 정상교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 NTR) 국가에 적용하는 'Column 1' 관세율이 아닌 'Column 2'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¹⁷⁾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운 형편이다.

위탁가공교역은 시설제공 유무에 따라 '단순교역형 위탁가공교역' 및 '설비제공형 위탁가공교역'으로 구분된다.

단순교역형 위탁가공교역은 위탁자는 원·부자재만 공급하고 생산설비와 기술은 수탁자의 것을 활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설비제공형 위탁가공교역은 위탁자가 원·부자재뿐만 아니라 생산설비와 기술을 함께 제공¹⁸⁾하는 형태를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남북간에는 단순교역형 위탁가공교역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설비제공형 위탁가공교역에는 첫째, 북한의 기존 생산공장을 활용하는 방식과 둘째, 북한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여 새로운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방식이 있다. 후자는 위탁가공형식을 벌린 새로운

형태의 투자로도 볼 수 있는데, 북한의 대남경협기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의 무역회사가 직접 계약당사자로 나서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계획경제의 특성상 토지 및 노동력 공급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¹⁹⁾ 거래 위험은 그 만큼 높은 형태라고 하겠다.

한편, 우리 정부는 위탁가공교역 활성화를 위해 1994년 11월 9일 기술자 방북 및 생산설비 반출을 허용한 데 이어, 1998년 4월 30일 생산설비의 반출 제한을 폐지하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5년 11월 4일 TV스피커 생산설비가 반출된 이후 총 121건 24,952천 달러 상당의 설비가 반출됨에 따라²⁰⁾ 남북 위탁가공교역은 단순교역형에서 설비제공형으로 그 질적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²¹⁾

III. 위탁가공교역 실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위탁가공교역은 남한기업이 원·부자재 전부를 공

17) 섬유와 의류제품의 경우 'Column 2'의 관세율이 'Column 1'에 비해 3~10배가 높고,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Column 1'의 관세율이 0~5%로 낮은 데 비해 'Column 2'의 관세율은 평균 35%에 달하고 있어, 'Column 2'의 관세율을 적용 받을 경우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없으며, 특히 섬유류의 경우 쿼타제에 해당되는 품목은 쿼타가 없을 경우 대미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임(김장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향후 전망", 북한뉴스레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년 7월호, p.2.).

18) 북한의 생산설비 노후화로 인해 기술만을 제공하는 위탁가공교역 방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9) 북한은 계획경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토지 및 노동력 사용계획이 전년 10월까지 제출되어 북한 당국 계획상에 반영되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함. 다만, 김정일의 지시가 있거나, 북한 당국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은 계획 반영 여부를 떠나 생산수단 사용이 가능한 실정임.

20) 앞, 통일백서, p.130.

21) 설비제공형 위탁가공은 단순교역형 위탁가공에 비해 품목의 다양화 및 품질의 고급화를 꾀할 수 있음.

급하고 북한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이른바 단순교역형 위탁가공교역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향후 위탁가공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설비제공형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단순교역형 위탁가공교역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순교역형 위탁가공교역의 실태를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탁가공교역업체들은 북한과의 교역 추진의 애로사항으로 ① 과도한 물류비(24.2%), ② 기술교육과 품질관리의 문제점(24.2%), ③ 사업파트너 선정 및 접촉(19.4%), ④ 계약불이행(16.7%) 등을 들고 있다.²²⁾

1. 거래선 발굴 및 견본제작

위탁가공교역 거래선 발굴은 주로 현지법인 또는 제3국의 중개인을 활용하고 있다.²³⁾ 즉, 위탁가공교역의 계약당사자가 대기업인 경우에는 중국, 홍콩 등 제3국의 현지법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조선족이나 교포기업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북 사업 경험이 있는 우리업체나 해외교포를 통해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접촉·상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²⁴⁾ 일정기간 위탁가공교역이 진행된 경우에는 중국 등지에서 북한측 교역당사자²⁵⁾와 직접 접촉·상담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중개상이 확보되고 위탁 가공할 품목이 선정된 다음에는 북한의 생산능력, 계약물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개인의 소개를 받아 북한을 방문하여²⁶⁾ 상담 및 견본제작을 의뢰하게 된다. 견본제작을 의뢰할 때에는 북한과의 직접 통신 불가, 현지 생산

- 22) 전문가들 역시 대북 교역관련 애로사항으로 노동력 관리 등(28.8%), 과도한 물류비(25.0%), 사업파트너 선정 및 접촉(23.1%), 계약불이행(13.5%) 등을 들고 있으며(한국개발연구원, KDI북한경제리뷰, 2001년 11월호, pp.32~39.),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과다한 물류비(29.2%), 기술지도 등 품질관리 곤란(28.1%), 납기지연·자재손실 등 교역 진행상의 애로(24.7%) 등이 위탁가공교역시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음(한국무역협회, 남북위탁가공교역 업체 실태조사, 2000. 5. 15, p.16.).
- 23) 한국무역협회가 2000년 5월 위탁가공교역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 거래선 발굴방법으로 중개인을 통한 방법(62.5%), 민경련 등 북한과의 직접 접촉(14.3%), 국내업체의 알선(12.5%) 등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음(위, 남북위탁가공교역 업체 실태조사, p.12.).
- 24)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는 중국 북경·단동에 상주직원이 있는 사무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화·팩스를 통한 연락이 가능하나, 금액이 적은 위탁가공사업에 대해서는 민경련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중개인을 통하여 민경련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중국에 있는 민경련과 회합·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접촉 15일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2항).
- 25) 우리 기업들의 위탁가공교역을 통하여 알려진 북한 무역회사로는 민경련 산하의 광명성총회사(의류, 피혁, 경공업), 삼천리총회사(의류, 봉제, 전자), 개선무역총회사(전자·전기, 일반상품) 및 일반 무역회사인 은하무역총회사(의류, 잡화), 봉화무역총회사(의류, 피혁), 대성무역총회사·능라도무역총회사·은별무역회사(섬유) 등이 있음.
- 26)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데, 처리기간에 20일이 소요됨(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및 1998년 4월 30일자 남북경제협력활성화 조치).

공장 방문 및 기술지도 제한²⁷⁾으로 인하여 생산공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세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견본 및 견본제작용 원·부자재(통상 3세트)를 함께 발송하고 있다.

견본 발송일로부터 제작된 견본을 수취하기까지는 통상 20~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북한 노동력의 질이 비교적 우수하기 때문에 작업지시서가 상세할 경우에 품질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계약체결 및 원·부자재 발송

견본제작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교역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위탁가공 계약 체결방식은, 초기에는 거래위험 감소를 위하여 중개인을 통한 간접계약, 즉 위탁가공사업 1건에 대해 2개의 계약서(남한기업 - 중개인간 계약, 중개인 - 북한 무

역회사간 계약²⁸⁾)를 체결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북한측 계약당사자와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된 다음에는 북한측 당사자와 직접 체결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 사례를 통해 살펴 볼 때, 계약서에는 ① 위탁가공 수량, ② 임가공료²⁹⁾, ③ 규격, ④ 자재 손실율³⁰⁾을 감안한 원·부자재 수량, ⑤ 포장, ⑥ 납기, ⑦ 임가공료 지불조건, ⑧ 품질검사, ⑨ 불가항력사유 및 손해배상, ⑩ 분쟁해결 등이 명기되고 있다.³¹⁾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또는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절차 없이 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4조).

다만, 동 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특정품목·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해당할 경

- 27) 이러한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일부 위탁가공교역 기업들은 비교적 북한 출입이 자유로운 중국인이나 조선족 기술자를 북한 현지에 파견하거나 북한 기술자연수를 중국공장에서 실시하고 있음. 위탁가공을 위한 기술지도 방식은 1995년 처음 이루어진 이후 1998년 7개 기업, 1999년 6개 기업, 2000년 10개 기업, 2001년 29개 기업에서 실시됨으로써(앞, 통일백서, p.129.),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하나 북한측의 초청장 발급 기피 등으로 인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한편, 북한 가공무역법 제34조는 외국기업 품질검사원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상시 체류를 허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제정 이전 북한이 필요로 따라 허용하던 것을 규정화 한 것에 불과한 것임.
- 28) 북한의 경우 가공무역은 무역회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장·기업소는 상급기관과의 합의를 거쳐 야만 할 수 있음(가공무역법 제5조). 위탁가공교역은 통상 북한 무역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북한 내 생산공장에 주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29) 임가공료는 거래품목에 따라 다르나, 의류의 경우 양복 상하 1벌당 16달러, 일반의류 상하 1벌당 2.1달러이며(한겨레신문사·경남대학교국동문제연구소, 남북경협 사례집, 2001, p.102.), 1인당 기준으로는 통상 월 50달러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음(임인택, “북한-중국 사업환경 비교”, 통일부 주관 남북경협추진 실무협의회자료, 2002, 1.).
- 30) 원·부재제 손실율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섬유류의 경우 초기에는 5%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3%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음.
- 31) 한편, 북한 가공무역법 제15조는 위탁가공무역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으로 ① 계약당사자명, ② 원료, 반제품, 부분품과 그 수량, ③ 가공·조립할 제품명과 그 수량, ④ 상표, ⑤ 원산지명, ⑥ 생산보장기간, ⑦ 가공임 금액과 지불방법, ⑧ 위탁책임 및 손해배상, ⑨ 분쟁해결 등을 열거하고 있음.

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반출입되고 있는데, 특정품목에는 농수산물이 주로 해당된다.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는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발송하게 되는데, 북한은 계획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자재를 북한 현지에서 조달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 통신이 불가능하고 생산공장까지의 운송에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³²⁾되기 때문에 제품 가공에 필요한 모든 원·부자재를 발송하고 있다.³³⁾ 포장재인 박스, 스티로폼, 포장비닐 등도 발송하고 있으며, 특히 섬유류의 경우에는 바늘, 단추, 옷핀까지도 발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탁가공교역 물품의 운송수단으로는 인천-남포간을 주 1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³⁴⁾ 국양해운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운임은 중국 항로³⁵⁾에 비해 2.5배 정도 비싼 20ft 컨테이너당 편도 800달러 수준이며,³⁶⁾ 편도 운항에 1일이 소요되고 있다.

3. 북한 내 가공 및 가공임 결제

발송된 원·부자재는 생산공장으로 운송되는데, 북한 내륙 운송의 원활화를 위해 남한 기업이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북한의 전력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생산차질 해소를 위하여 원·부자재 이외에 소형발전기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빈번하며, 특히 설비제공형 위탁가공교역의 경우 기본설비뿐만 아니라 설비 가동을 위한 소형발전기 및 설비 고장에 대비한 부속품 등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³⁷⁾

품질검사 및 원산지증명은 북한의 공인검사기관인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로부터 받고 있다.³⁸⁾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 관행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원산지증명서를 손으로 작성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국제협약에 맞지 않으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공임 결제는 신용장 거래가 아닌 경우 대부분 위탁가공물품을 인수한 다음 7일

- 32) 북한과의 통신은 중국의 현지법인이나 중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포에서 평양 소재 공장까지의 운송기간은 평균 4~5일이 소요됨(앞, 남북경협 사례집, p.42.)
- 33) 원·부자재 중 단 한 개 품목이 누락되어도 바로 생산 중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임.
- 34) 다만, 남포 갑문이 결빙되는 겨울에는 주 1회 정기 운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 35) 현재 중국항로 운임은 인천-단동간은 약 700달러이며, 인천-홍콩간은 500달러임.
- 36) 인천-남포간 20ft 컨테이너당 편도운임은 1998년 1,000달러 수준에서 2000년 900달러 수준으로 낮아진 다음 현재 8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한편 국양해운은 인천-남포간 운송 선박 구입 및 남포항 하역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인천-남포간 선박운임을 720불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확약한 바 있어, 동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금년 5월경에는 이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37) 심지어는 발전기 가동을 위한 디젤유를 보내는 경우도 있음.
- 38) 위탁가공교역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선적 전에 반드시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북한에서는 '산지증명서'라고 함)를 구비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실시하는 실체기관은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산하의 원산, 평양, 남포, 송림, 청진, 해주, 송악산 등의 대외상품검사소임. 한편 인천-남포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중국 단동 등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북한 발행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제3국 세관이 발행한 통과화물증명서가 필요함.

이내에 중개인 또는 제3국 은행의 북한회사 계좌로³⁹⁾ 위탁가공임 전액을 전신송금(T/T)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납기가 지연된 경우에는 클레임을 제기하게 된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남한기업이 요구하는 품질과 납기를 비교적 잘 맞추어 주고 있기 때문에 클레임 발생은 비교적 적은 편이나, 북한의 사정 또는 주문물량 증가로 기존 공장에서 모두 생산하지 못하고 다른 공장에서 일부를 생산하는 경우, 또는 북한 내 육로수송의 문제로 인해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금액이 적은 경우는 보통 주의를 촉구하는 데 그치며, 다액인 경우는 다음 가공임에서 상계하거나, 50%씩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IV. 전망과 과제

1. 전망

지난해 위탁가공교역은 남북간 선박운항 일시 중단 및 북·미관계 악화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북한이 위탁가공분야 및 전기·전자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⁴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 내에서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인하되면, 한국기업의 對중국 섬유류 위탁가공은 확대되고 한국기업의 對북한 섬유류 위탁가공은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⁴¹⁾ 그러나 ① 미국의 대북정책이 당분간은 조정국면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⁴²⁾ ② 최근 들어 위탁가공교역은 남북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된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③ 초보적인 대북 투자라 할 수 있는 설비제공형 위탁가공교역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④ 세계경제의 성장세 전환⁴³⁾에 따라 남한기업들의 위탁가공교역 추진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며, ⑤ 위탁가공교역의 품목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

- 39)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임가공료 지급방법으로는 중개인을 통한 간접결제 방식 및 제3국은행 북측상사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 각각 39.7%를 차지하고 있음(앞, 남북위탁가공교역업체 실태조사, p.14.). 한편 송금경로로는 북경, 마카오, 싱가폴 등지의 은행이 주로 이용되고 있음.
- 40) 북한은 2002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과학기술을 전반적으로 빨리 발전시키면서, 특히 정보기술과 정보산업 발전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전기·전자분야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로동신문, 2002. 1. 1자 보도).
- 41) 양문수, “중국 WTO 가입이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LG주간경제 제659호, LG경제연구원, 2002. 1. 23., p.20.
- 42) 금년도 북·미관계 전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종렬, “2002년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과 과제”,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2년 1월호, pp.17~28를 참조하시기 바람. 한편 미국이 현재까지 북한에 대하여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국방비 예산 증액 및 남한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며, 이 두 가지 목표 달성여하에 따라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결정될 전망임.
- 43) 2002년 세계경제 성장률에 대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은 2001년과 동일한 수준인 2.4%로 전망하고 있으나(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1. 12),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는 2001년의 1.9% 보다 높은 2.3%로 전망하고 있으며(WEFA, *World Economic Outlook, Fourth Quarter*, 2001. 12),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점진적 회복과 주요국들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200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01년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라 일부 품목의 경우 제3국(일본, 영국, 멕시코, 이집트 등)으로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⑥ 금년 1월중 위탁가공교역액(9,126천 달러)이 2001년 12월 대비 18.8% 증가(2001년 1월 대비 47.6% 증가)하였으며,⁴⁴⁾ ⑦ 위탁가공 확대를 위한 북한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남북 위탁가공교역 규모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북·미간 갈등, 북한의 선박 입항 거부를 비롯한 예상치 못한 우발적 사건 등 경제외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시적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과제

가. 물류비 부담 해소

물류비 관련 문제는 위탁가공교역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의선 철도(국도 1호선 포함) 연결과 북한 남포항 하역설비 개·보수 지

원이 필요하다.

경의선 철도가 연결될 경우 남포-수도권 간의 철도 운송비는 현행 남포-인천간 해상수송비의 1/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⁴⁵⁾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하여 이 사업을 조속히 완료 할 필요가 있다.⁴⁶⁾ 그러나 남북 철도연결은 남북한간 군사대화가 필요하며, 이 경우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실행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남포항 하역설비 개·보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남포항의 경우 높은 항만 사용료⁴⁷⁾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역설비의 낙후, 잣은 정전 등으로 인하여 체선 및 통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 협력기금으로 북한 항만하역설비 개·보수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북한으로부터 항만 사용료 인하⁴⁸⁾ 및 하역우선권 확보를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위탁가공교역 여건 개선 및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며, 위탁가공교역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의 실현을 통하여 물류비 절

- 44)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27호 p.16.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이 2001년 10월 교역업체 및 북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탁가공교역업체의 61.3%, 전문가의 48.2%가 2002년도 위탁가공교역량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음(앞, KDI북한경제리뷰, pp.33~40.).
- 45) 이태섭, “기업의 대북 투자 전략”,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 현대경제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 주최 남북관계 학술세미나자료, 2000. 5. 9. p.37.
- 46) 현재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은 비무장 이남지역은 완료되었지만, 북한의 사정 등으로 인해 북측 지역의 공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47) 현재 남포항 사용료는 2,500톤급 선박의 경우 약 9,500달러로 중국 대련항의 3,500~4,000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과다한 물류비용의 원인이 되고 있음(신지호, “물류체계 개선방안”, 남북경협 가이드라인, 삼성경제연구소, 2001. p.234.).
- 48) 현재 국양해운은 민경련 산하의 개선무역총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아 40ft 컨테이너용 적재기 및 운반차량 등을 북한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항만 사용료 인하를 추진 중에 있음.

감이 실현될 경우 물동량 증가를 통한 물류비 추가 인하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직교역 체제 구축

위탁가공교역의 대부분은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은행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상담창구 개설 및 남북 환결제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직교역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당국간 회담을 통하여 판문점 또는 경의선 연결지점에 ‘남북위탁가공교역 상담창구⁴⁹⁾’를 개설하여 위탁가공교역 정보를 교환하고, 거래를 알선하며, 통신상의 애로를 해소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남북 은행간 환결제 체제 구축을⁵⁰⁾ 통하여 중개인 또는 제3국 은행 경유로 인한 은행수수료 인하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위탁가공교역 관련 규제의 지속적 완화

우리 기업이 위탁가공교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정규제는 이미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나, 위탁가공교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인 행정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북한측에서 위탁가공교역 협상과 관련하여 연락이 올 경우, 하루 속히 북경이나 단동으로 가야할 형편인데, 북한주민 접촉승인 처리기간에 15일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10일 내지 7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방문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역시 현행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⁵¹⁾

한편, 상당수의 농수산물과 이를 가공한 제품은 대부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반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는 국내시장의 교란⁵²⁾ 방지 및 국내 농수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이기는 하나, 긴급반입제한조치 제도를 마련하고 농어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조사해 본 다음, 반입승인품목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기술자 방북 · 체류 허용 촉구

북한은 기술 또는 설비가 부족한 일부 전기 · 전자제품에 한하여 기술자의 방북 ·

49) 남북위탁가공교역 상담창구는 남북한의 위탁가공교역 전문상담역이 상주할 뿐만 아니라, 남북간 직통전화가 개설된 조직을 뜻함.

50) 남북 당국은 2000년 12월 16일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직교역 전환 초기에는 청산결제방식을 통하여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킨 다음 점차 환결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남북간 환결제 구축시에는, 북한의 은행은 국가기관이라는 점과 남북간 금융거래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내지 신뢰성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점 및 남북간 금융협력은 정부의 조정능력을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초기의 대북 환결제 업무는 대외거래전담은행이 담당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환결제 체제가 구축된 이후 일반상업은행들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51) 북한방문증명서 발급기간 단축시에는 1998년과 같이 행정조치로 할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것임.

52) 남북간 거래의 무관세 혜택을 약용하여, 중국 등 제3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남한 기술자들의 방북을 제한하고 있다. 기술자가 상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기준수 및 품질검사가 곤란하게 되며, 원·부자재 소요량 파악 곤란으로 생산원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 특히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거나 현대화된 설비를 제공할 경우 남한 기술자의 방북·체류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과의 회담시 북한 경제회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탁 가공교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남한 기술자의 상시 체류 허용이 불가피한 점을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

마. 개별 기업의 수익성 제고

위탁가공교역에 참여하는 업체 중에는 수익성보다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북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협력선 구축, 실향민으로서의 고향 지원, 기업이미지 제고 등 부차적 목적을 가

지고 참여하는 업체가 있다.⁵³⁾ 그러나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생존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에서 품목선정⁵⁴⁾ 및 판로확보 등 수익성⁵⁵⁾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위탁가공교역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일회성 교역이나 수익성을 무시한 교역을 했다가 중단할 경우에는 남북간 불신의 골만 깊게 만든다는 점에서, 위탁가공교역 추진 기업은 장기적이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교역을 추진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⁵⁶⁾

한편 위탁가공 유망분야로는 제조원가에서 자재비 비중이 낮고,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공업 분야(섬유·봉제 등)⁵⁷⁾ 및 농산물 분야(한약재·참깨), 북한 당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 분야 등을 들 수 있겠다.

- 53) 한국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위탁가공교역을 추진하는 업체는 48.4%에 불과하며, 시장 선점(29.0%), 민족교류협력에 기여(19.4%) 등을 위탁가공교역의 동기로 들고 있음(앞, KDI북한경제리뷰, p.28.).
- 54) 품목 선정시에는 북한의 전력난 심화로 인한 공장가동 저하, 하역설비 및 운송장비 노후화에 따른 납기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히 계절상품, 유행상품의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
- 55) 남북 위탁가공교역을 통하여 경제적 이윤을 보고 있는 업체는 50%에 불과한 실정임(앞, KDI북한경제리뷰, p.29.). 한편 위탁가공교역의 수익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위탁가공비 이외에 원·부자재비, 중개수수료, 운임, 원부자재 손실율, 방북비용(접대비 포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56) 홍순직,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 통일정책연구, 통일연구원, 제9권 1호, 2000, p.29. 한편 북한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한꺼번에 대량 물량을 계약하기보다는 기업의 능력에 맞는 소규모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57)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1년 8월 기업실사지수(BSI) 조사 대상업체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섬유·의류가 남북경협 확대시 우선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44.6%)로 선정된 바 있음(전국경제인연합회, 주요기업의 남북경협 현황 및 시사점, 2001. 9. p.7.).

〈참고문헌〉

1. 김장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향후 전망”, 북한뉴스레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년 7월호
2. 배종렬, “2002년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과 과제”,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2년 1월호
3. 신지호, “불류체계 개선방안”, 남북경협 가이드라인, 삼성경제연구소, 2001
4. 양문수, “중국 WTO 가입이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LG주간경제 제659호, LG경제연구원, 2002. 1. 23
5. 오승렬·조동호, “남북경협의 평가와 새로운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주최, 남북경협의 새로운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에 관한 정책세미나, 2001. 10. 26
6. 이태섭, “기업의 대북 투자 전략”,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 현대경제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 주최 남북관계 학술세미나자료, 2000. 5. 9
7. 임인택, “북한-중국 사업환경 비교”, 통일부 주관 남북경협추진 실무협의회자료, 2002. 1
8. 홍순용, “북한산 위탁가공품의 수출경쟁력 비교”, 북한뉴스레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년 10월호
9. 홍순직,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 통일정책연구, 통일연구원, 제9권 1호, 2000
10.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요기업의 남북경협 현황 및 시사점, 2001
11.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각호
12. _____, 통일백서, 2002
13. 한국개발연구원, KDI북한경제리뷰, 2001년 11월호
14. 한겨레신문사·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남북경협사례집, 2001
15. 한국무역협회, 남북위탁가공교역 업체 실태조사, 2000. 5. 15
16. 로동신문, 2002. 1. 1
17.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제2권, 1985
18. 사회안전부출판사, 민사법사전, 1997
18.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제38권(1992), 제40권(1994), 제44권(1996)
19.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1. 12
20. WEFA, *World Economic Outlook, Fourth Quarter*, 2001. 12